

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6. 5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6. 5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6. 15

(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감사실장 황해룡)

### 가. 제안사유

- 2006. 6. 30일자 사회복지사무소의 존속기한 만료 및 2006. 7. 1부터 시행되는 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이는 여유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#### ○ 주민생활지원국 설치

- 사회산업국,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을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설치(안 제3조)
-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, 주민서비스과, 지역경제과, 환경위생과, 청소행정과를 둠(안 제6조제1항)
-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(안 제6조제2항)
  -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분장사무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는 도시국으로 이관하고, 총무국 분장사무중 “취업알선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”, “청소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사무로 분장함

- 여유키구 명칭변경 : 도시개발과 → 도시개발추진단(안 제3조의2)
- 도시국에 두는 과 조정 : 5개과 → 5개과 1단
  - 교통행정과를 사회산업국에서 이관하여 건설과, 재난안전과, 교통행정과, 건축과, 지적과, 도시개발추진단 순으로 함(안 제7조제1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
- 예산조치 : 동 상담실 설치 예산 필요
- 입법예고 : 2006. 5. 18 ~ 6. 2(15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- 기 타 :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(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-1428, 2006.4.19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행정기구는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 수요가 많은 곳에 기구를 확대 설치하여야 하며, 내부적으로는 통솔, 명령 체계가 확립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며, 기 조직된 전문화된 기구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함
- 특히, 주민이 부서의 명칭만 보고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서명칭을 만들어야 되고, 부서 내에서는 업무량, 직원 수, 행정수요에 맞추어 팀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
- 주민생활지원국, 주민생활지원과, 주민서비스과, 도시개발추진단, 지역보건팀 등은 쉽게 추진업무를 알 수 없고, 구의 기획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총괄기획팀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어 대·내외적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으며

- 지역보건팀, 전염병관리팀 등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서의 명칭도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며 특히, 팀간에 업무량, 직원 수, 행정수요에 따라 현황의 범위내에서 팀을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 행정기구의 설치는 신중하게 처리할 부분이 많으므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